

정 관

제정 1991. 12. 9	개정 1997. 8. 8
개정 1999. 5. 27	개정 2000. 3. 10
개정 2002. 3. 22	개정 2003. 3. 21
개정 2004. 3. 29	개정 2005. 3. 23
개정 2006. 3. 24	개정 2009. 3. 30
개정 2010. 10. 14	개정 2012. 3. 27
개정 2013. 3. 28	개정 2014. 3. 31
개정 2016. 3. 29	개정 2018. 3. 26
개정 2019. 3. 28	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상호) 회사는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(이하“회사”라 한다)라 한다. 영문으로는 KT Hitel CO.Ltd.로 표기한다.

제 2 조 (목적)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정보통신서비스업
2. 인터넷 관련 제반 사업
3. 전자상거래 및 상품유통판매업
4. 정보통신 관련 광고 및 출판산업
5. 콘텐츠 관련 설비의 대여 및 판매업
6.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콘텐츠 구축 용역업

7.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
8. 정보통신에 관한 교육훈련 및 수탁사업
9. 시스템 통합사업 및 관련장비의 판매업
10. 별정통신사업
11. 영화, 방송 기타 멀티미디어 및 공연 관련 서비스 사업
12. 영화, 방송 기타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응용상품의 제작사업
13.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 사업
14. 부동산 임대업
15. 교육업
16. 상품권 발행 및 매매업
17.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
18. 기업집단 내 타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 개발 및 판매 사업
19. 각종 일반 판매용품 제조 및 도·소매업
20. 식품 가공 및 의류 봉제 판매업
21. 농수축산물, 위수탁 판매·중개업
22. 여행알선업 등 관광 사업
23. 보관·창고업
24. 비디오·음반·테이프 제작, 국내·외 판매 사업
25. 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연수시설·기자재 임대 사업
26.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의 수집, 가공 및 국내·외 판매 사업
27. 보험 대리점업
28.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조사 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업
29. 의료용구 판매업
30. 광고 제작 및 대행업
31. 이동통신기기 대리점업
32. 결혼중개업체 및 이사서비스업체 알선업
33. 인터넷 복권판매 대행업
34. 온라인 음원 유통 대행업
35. 수입자동차 판매업 및 판매대행업
36. 벤처 인큐베이트업 및 기타 투자업
37.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
38. 캐릭터 상품의 제작, 인쇄, 판매업 및 제 3 자 라이선싱 부여 및 캐릭터를 이용한 공연, 전시업
39. 도서,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 인쇄업, 출판업

40. 화장품 제조 및 도·소매업
41. 유아용품 제조 및 유통·수출입업
42. 가상증강현실(VR/AR) 기기 체험관 등 운영업,
가상증강현실(VR/AR) 시스템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43. 유원시설업
44. 기타 위 각호 외의 도·소매업
45. 위 각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
46.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

제 3 조 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

1.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.
2.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·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 (광고방법)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kthcorp.com>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"한국경제신문"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 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.

제 6 조 (일주의 금액) 회사가 발행하는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(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팔십만주로 한다.

제 8 조 (주식의 종류)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
제 9 조 (주식 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신주인수권)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② 회사는 제①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
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 조 및 제 1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
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 발행하는 경우
3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
4.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5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 증서(DR)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6. 회사가 첨단기술 도입, 사업다각화, 해외진출,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.

③ 삭 제

④ 법령 또는 이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는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한 위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(주권불소지)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일반공모증자 등) ①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“경영상 필요로”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.

③ 일반공모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.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6 조의 8 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주식매수선택권)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

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,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1.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(상법 시행령 제 1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2. 주요주주(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그 특수관계인
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

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주식을 말한다)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
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99

를 초과할 수 없고,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는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.

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
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
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2. 제 1 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 1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

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 년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.

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⑩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2.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
3.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5. 정년으로 인한 퇴임, 또는 퇴직한 경우

제 14 조 (신주의 배당기산일)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(배당기산일)으로 본다

제 15 조 (명의개서대리인)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.

-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
-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.
-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제 16 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 삭제

- 제 17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**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
-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 -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사 채

- 제 18 조 (전환사채의 발행)**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채 모집 직전의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의 4 배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주주 이외에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제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 -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

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

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 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직전 일까지로 하며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후 1 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서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9 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채 모집 직전의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의 4 배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
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

④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직전 일까지로 하며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후 1 년이 경과한 후에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서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4 조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0 조 (준용규정) 제 15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 4 장 주주총회

제 21 조 (소집시기)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
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

따라 소집한다.

제 22 조 (소집권자)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.
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 시에는 제 39 조의②항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3 조 (소집통지 및 공고)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,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③ 회사가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본지점, 명의개서대행회사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본항의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24 조 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25 조 (의장)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.

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 시에는 제 39 조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6 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27 조 (주주의 의결권)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.

제 28 조 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 이 회사,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

제 29 조 (의결권의 불통일 행사) ① 2인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

제 30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② 제①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1 조 (의결사항) 주주총회는 다음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이사,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
2. 임원의 보수한도액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
3. 결산의 승인
4. 자본의 감소
5. 정관의 변경
6. 회사의 합병 및 해산
7. 기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

제 32 조 (주주총회의 의결방법)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② 삭제

제 33 조 (주주총회의 의사록)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제 5 장 이사·이사회

제 34 조 (이사의 수) ① 회사에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를 두되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 하며,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사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.

③ 삭제

제 34 조의2 (경영임원) ① 회사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내이사를 포함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.

② 경영임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5 조 (이사의 선임)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③ 이사 선임 시 상법 제 382 조의 2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6 조 (이사의 임기)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. 그러나,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② 삭제

제 37 조 (이사의 보선) ① 이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다만 이 정관 제 34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사외이사가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4 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이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38 조 (대표이사 등의 선임)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 사장 1명을 선임할 수 있다.

제 39 조 (이사의 직무) ①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사내이사 전원이 유고 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0 조 (이사의 보고의무) ①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1 조 (감사의 직무) 삭제

제 42 조 (감사의 감사록) 삭제

제 43 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
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 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.

④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.

⑤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⑥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둔다.

제 44 조 (이사회회의 결의방법)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삭제

제 45 조 (결의사항) ① 삭제

② 삭제

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,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46 조 (이사회회의 의사록) ① 이사회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되 의사록에는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,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.

② 삭제

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 회사는 제③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이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 47 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가 정한 지급한도 액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 6 장 감사위원회

제 47 조의 2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.

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제 47 조의 3 (감사위원회의 직무)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
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

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-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다.
- ⑦ 감사위원회는 제①항 내지 제⑥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.
-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제 47 조의 4 (감사록)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7 장 계 산

제 48 조 (회계년도)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

제 49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, 비치 등)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상법 제 447 조와 제 447 조의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6 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감사위원회는 제①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 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이사 사장은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, 상법 제 447 조의 2 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대표이사 사장은 상법 제 477 조 각호의 결산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

한다.

⑤ 대표이사 사장은 제①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50 조 (이익금 처분)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1. 이익준비금
2. 기타의 법정적립금
3. 배당금
4. 임의적립금
5.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

제 50 조의 2 (주식의 소각) ① 회사는 자본감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

제 51 조 (배당금의 지급)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,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
② 회사는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거하여 사업년도중 1 회에 한하여 (6 월 30 일을 기준일로) 이사회 결의로 이익을 중간배당 할 수 있다.

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
제 52 조 (배당금 지급청구권과 소멸시효)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
② 제①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.

제 8 장 보 칙

제 53 조 (준용규정)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의 법령의 규정과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제 54 조 (비밀업수의 의무)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55 조 (경영정보공시)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시한다.

부 칙 (1991. 12. 10)

제 1 조 (시행일) 정관의 시행일은 창립일로 한다.

제 2 조 (발기인의 성명과 주소)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.

부 칙 (1997. 8. 8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7 년 8 월 8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재임중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(1999. 5. 27.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9 년 5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 (2000. 3. 10.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0 년 3 월 10 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 (2002. 3. 22.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2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 (2003. 3. 21.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3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 (2004. 3. 29.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4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 (2005. 3. 23.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5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 (2006. 3. 24.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6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된다.

제 2 조 (이사회에 의결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총회의 사후승인에 관한 적용례), 제 13 조 2 항의 개정규정은 2006 년 3 월 29 일 이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2009. 3. 30.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9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 (2010. 10. 14.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0 년 10 월 14 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 (2012. 3. 27.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.

다만, 제 49 조의 1 항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 3. 28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3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 (2014. 3. 31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4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 (2016. 3. 29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6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 (2018. 3. 26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8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 (2019. 3. 28)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9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된다.

다만, 제 9 조, 제 15 조, 제 16 조 및 제 20 조의 개정 규정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.